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-9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무료 개방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, 설·추석 연휴 기간 구민과 귀성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명절 연휴 기간 청사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근거 마련(안 제3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6. 7. 16. ~ 2026. 8. 5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[법무팀 의견]

관 계 법 령	-
법무팀 검토의견	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무료 개방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, 설·추석 연휴 기간 구민과 귀성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
참고사항	-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.

제3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설 연휴(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)
2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추석 연휴(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)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주차장 운영시간) ①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연중 24 시간으로 하며 유료로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제3조(주차장 운영시간) ① ----- ----- ----- <u>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 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1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설 연휴(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)
<u><신 설></u>	2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추석 연휴(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)
<u><신 설></u>	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조성은
연 락 처	02-3153-8206